

의안번호	제 497 호
의 결 연 월 일	2010년 4월 일 (제 289 회)

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강태원의원 외 5인
발의연월일	2010년 4월 7일

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9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0년 4월 7일
발 의 자 : 강태원, 연만흠, 박재국
장주식, 조영재, 최광옥
의원(6인)

개정이유

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를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,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용어 및 일부 절차를 정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

주요내용

- 조례명칭을 알기 쉽게 변경.
 - 조례명을 “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”로 개정
-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“위원장은 위원들을 소집하고”를 “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”로 수정함(안 제7조)
-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수행하는 “정책연구과제”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조문의 “정책연구과제”를 “정책연구용역”으로 정비하고, “정책연구과제 신청서”를 “정책연구용역 제안서”로 정비함 (안 제6조, 제

9조, 제10조)

- 정책연구용역 결과 활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복되는 조문은 삭제하고 조문 내용을 보완함(안 제8조, 제14조)

- 위원회에서 지정하던 정책연구용역평가 전문위원을 용역담당관이 정책연구용역 제안 시 지정토록 함(안 제10조, 제13조)

참고자료

- 가. 관계법령 발췌 : 별첨
- 나. 관련부서 협의 : 의견없음(정책관리실)
- 다. 예산조치 :
- 라. 규제심사 :

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”를 “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소방본부장을 제외한”을 삭제한다.

제6조제1호 중 “정책연구과제”를 “정책연구용역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위원들을”을 “회의를”로 한다.

제8조를 삭제한다.

제9조의 제목 중 “(과제담당관)”을 “(용역담당관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정책연구과제별”을 “정책연구용역별”로, “과제담당관”을 “용역담당관”으로, “정책연구과제를”을 “정책연구용역을”로, “팀장·과장급”을 “과장급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“과제담당관”을 “용역담당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정책연구과제”를 “정책연구용역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중 “(정책연구과제 신청서의 제출)”을 “(정책연구용역 제안서의 제출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책연구과제 신청서(이하 “신청서”라 한다)”를 “정책연구용역 제안서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제5호(종전의 제4호)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평가전문위원(해당 정책연구용역 분야의 외부 전문가 1명)

5.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

② 용역담당관은 제안할 정책연구용역이 제14조에 따라 공개된 정책연구용

역과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, 검토 결과 유사한 연구용역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연구용역과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의 제목 중 “정책연구과제”를 “정책연구용역”으로 하고,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“정책연구과제를”을 “정책연구용역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정책연구과제”를 “정책연구용역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본문 중 “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점검 하여야 한다”를 “용역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진행 상황을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 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2월”을 “2개월”로 하고, “중간점검”을 “점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과제담당관”을 “용역담당관”으로,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13조제1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용역담당관은 평가전문위원과 함께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예비평가하고, 예비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(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활용의 공개) 용역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내용이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정책연구용역 결과 :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
2. 정책연구용역 활용상황 :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	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
<p>제5조(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당연직 위원은 소방본부장을 제외한 충청북도 본청의 실·국·본부장 및 정책기획관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지방행정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	<p>제5조(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,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 본청의 실·국·본부장 및 정책기획관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지방행정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정책연구과제의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</p> <p>2.~4. (생략)</p>	<p>제6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정책연구용역의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</p> <p>2.~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들을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</p> <p>②~④ (생략)</p>	<p>제7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</p> <p>②~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정책연구용역의 공개 및 활용) 도지사는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,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당해 용역계약사항, 용역의 결과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< 삭제 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9조(과제담당관) ① 도지사는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두며,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팀장·과장급 공무원이 된다.</p> <p>②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수립 2.~4. (생략) 	<p>제9조(용역담당관) ① 도지사는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별로 용역담당관을 두며, 용역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을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.</p> <p>② 용역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.~4. (현행과 같음)
<p>제10조(정책연구과제신청서의 제출)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과제신청서(이하 "신청서"라 한다)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정책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 2.~3. (생략) 4.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<p>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제담당관은 제8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공개자료 등을 통하여 그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, 검토 결과 유사한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시 기존 연구과제와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10조(정책연구용역 제안서의 제출) ①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제안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정책연구용역 추진의 필요성 2.~3. (현행과 같음) 4. 평가전문위원(해당 정책연구용역 분야의 외부 전문가 1명) 5.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<p>② 용역담당관은 제안할 정책연구용역이 제14조에 따라 공개된 정책연구용역과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고, 검토 결과 유사한 연구용역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연구용역과의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.</p>
<p>제11조(정책연구과제의 심의기준)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정책연구과제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정책연구과제의 적합성 2.~4. (생략) 	<p>제11조(정책연구용역의 심의기준)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정책연구용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정책연구용역의 적합성 2.~4. (생략)

현행	개정안
<p>제12조(연구진행상황의 점검) ① <u>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서에서 정한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점검 하여야 한다.</u> 다만, 자문형 용역 또는 연구기간이 2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<u>중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 이 경우 위원회는 점검결과를 심의하거나 검토의견의 제시 및 후속조치를 마련·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.</p>	<p>제12조(연구진행상황의 점검) ① <u>용역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진행 상황을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 하여야 한다.</u> 다만, 자문형 용역 또는 연구기간이 2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<u>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용역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삭제></p>
<p>제13조(연구결과의 평가) ① <u>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위원회의 외부전문가인 위원 또는 해당 연구 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1인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 및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예비평가하고, 예비평가결과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생략</p>	<p>제13조(연구결과의 평가) ① <삭제></p> <p>② <u>용역담당관은 평가전문위원과 함께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예비평가하고, 예비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4조(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)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활용상황을 위원회에 제출하고, 그 내용을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</p>	<p>제14조(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활용의 공개) 용역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내용이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정책연구용역 결과 :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2. 정책연구용역 활용상황 :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 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